



제 4 2 2 회 국 회 (임 시 회)
제 1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기관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91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전 완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기관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2024. 12. 19.
3. 회 부 일: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 및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직장별로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의 구성이나 역할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별 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 형태가 조례, 규정, 지침 등으로 상이하여 직장 체육의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일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동조 제5항·제6항 신설, 동조 제7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 ③ (생략)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 ----- ----- ----- ----- ----- ----- -----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신 설>

<신 설>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운동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2. 운동경기부의 체육지도자, 선수 등의 채용이나 재계약 및 보수 책정
3. 운동경기부의 우수 선수 선발 및 표창
4. 그 밖에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감독한다.	<u>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u> <u>위원은 직장 체육에 관한 지식과</u> <u>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u> <u>위촉한다.</u> ⑦ -----<u>제6항까지의</u>----- ----- ----- ----- -----.
--	---

다. 검토의견

- 현행법령상 상시 근무 직장인 1천명 이상의 국가기관·공공단체는 체육동호인조직·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상시 근무 직장인 1천명 이상의 공공기관·공공단체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함.¹⁾

[직장 체육 진흥 관련 현행 규정 내용]

대상 기관	상시 근무 직장인 1천명 이상의 국가기관·공공단체	상시 근무 직장인 1천명 이상의 공공기관·공공단체
근거 조문	법 제10조제2항·제3항, 시행령 제7조제1항	법 제10조제4항, 시행령 제7조제2항
의무 사항	○ 체육동호인조직 설치 ○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설치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 2023년 12월 기준 지자체 191곳, 공공기관 15곳 등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사항이 마련된 규범이 조례, 규정, 지침 등으로 상이하여 직장체육의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1) [참고자료1] 직장 체육 진흥 관련 현행 조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2023. 12. 기준)

구분	지자체*	공공기관
기관수(곳)	191	15 **전체 의무대상기관 92

*광역 13개, 기초 178개

자료: 문체부(원자료: 대한체육회)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의 근거 규범 현황]

(2023. 12. 기준)

규범	지자체 191개
조례	○ 광역: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전북, 충북 등 6개 ○ 기초: 강원 삼척시, 경기 가평군, 경남 남해군, 경북 포항시, 대구 달서구, 울산 울주군, 전남 고흥군, 충남 공주시 등 81개
규정·지침	○ 경북(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충남(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등 104개* * 광역 7개, 기초 97개

자료: 문체부(원자료: 대한체육회)

-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별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이 주민의 참여 및 행안부장관 보고 등이 이뤄지는 조례로 규율되고²⁾

2)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통일적으로 관리되는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한 안정적·일관된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아래와 같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임.

- 현재, 상시 근무 직장인 1천명 이상의 공공기관·공공단체의 기관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개정안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는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관련 현황 자료가 없고, 의무대상 공공기관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의무 준수율이 16.3%(92곳 중 15곳)에 불과한바, 개정 내용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전체 의무대상기관 대상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음.
- 안 제10조제4항(지자체 조례로의 위임)과 관련하여, 조례에의 포괄위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단 구성·자격·임용·고용해지, 훈련 및 보수, 포상·징계,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조례로 규율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2] 조례 제정 등 절차

- 안 제10조제5항제2호(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 ‘임용’, ‘채용’, ‘임명’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고용형태를 어떻게 포괄하여 법률에 명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³⁾, 재계약에 선행되는 ‘계약’이 심의사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⁴⁾

문 의 처

02)6788-5375

3) < 조례별 단위(지도자·선수) 고용형태에 대한 표현 사례 >

조례 예시	고용형태 표현	조례 예시	고용형태 표현
경기 가평군, 강원 원주시	임용·해임	경기도, 경남 산청군	임용·계약해지
대구 달서구	채용·해임	부산 금정구	채용·계약해지
서울 강남구, 전남 목포시	채용(계약)·계약해지	강원 속초시	임명(고용계약)·면직
전남 장성군	임용·면직	충북 충주시	임용(입단계약)·면직

4) < 수정의견 >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④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u>필요한 사항은</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④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u>목적 및 운영주체, 선수 선발 기준, 예산 지원, 활동 범위, 선수 지원, 규정 위반 및 처벌 등 필요한 사항은</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하거나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하거나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운동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1. 운동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2. 운동경기부의 체육지도자, 선수 등의 <u>채용이나 재계약</u> 및 보수 책정	2. 운동경기부의 체육지도자, 선수 등의 <u>채용이나 계약</u> 및 보수 책정
3. 운동경기부의 우수 선수 선발 및 표창	3. 운동경기부의 우수 선수 선발 및 표창
4. 그 밖에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자료1] 직장 체육 진흥 관련 현행 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감독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참고자료2] 조례 제정 등 절차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으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5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3]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 현황 (자료: 문체부)

□ 사업 개요

- 사업명: 지방체육진흥
- 사업목적: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예산 지원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직장운동경기부 대상 교육 및 관련 연구
- 예산 및 수행기관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예산사업명
'23년	19,90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진흥+동계종목 대학팀·실업팀 창단 지원 사업
'24년	15,788	대한체육회	
'25년	17,235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지방체육진흥

□ 지원 사업 현황

- (창단 및 운영 지원)
 - ▲ 창단 시 단체종목 5억 및 개인종목 3억 이내 지원(3년간 균등 분할지원),
 - ▲ 하계종목 운영비 2천~5천만원, 동계종목 2천~7천만원 지원(훈련 및 대회 참가비, 훈련용품 등)
- (최근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0월
하계 종목	창단 지원	전체 지원금	-	-	1,601	3,116
		지원 팀	-	-	17팀	33팀
	운영 지원	전체 지원금	12,737	12,800	14,709	10,586
		지원 팀	396	366	342	292팀
동계 종목	창단 지원	전체 지원금	633	300	317	461
		지원 팀	3팀	1팀	3팀	4팀
	운영 지원	전체 지원금	513	784	945	918
		지원 팀	20팀	22팀	25팀	26팀

※ 창단지원 사업(2024년 기준)

구분	합계 (백만원)	2년차('23~'25)	1년차('24~'26)
하계종목	3,116	1,602 (17팀)	1,514 (16팀)
동계종목	461	317 (3팀)	144 (1팀)

- (제도 지원)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및 운영규정 조사 실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참고자료4]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자료: 문체부)

□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현황('23.12월 기준)

○ 총괄 현황

(단위: 팀, %)

구분	합계	지자체	체육단체	공공기관*	일반기업	국군체육부대
팀수(동계팀수)	840(41)	441(24)	256(11)	64(2)	57(3)	22(1)
비율(동계비율)	100(100)	52.5(58.5)	30.4(26.8)	7.7(4.9)	6.8(7.4)	2.6(2.4)

*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포함

○ 운영주체 현황

구분	합계	지자체	체육단체	공공기관*	일반기업	국군체육부대
운영주체	326	191	44	42	48	1
비율(%)	100.0	58.6	13.5	12.9	14.7	0.3

*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포함

○ 지역별 현황

구분	팀 수	(비율)	구분	팀 수	(비율)	구분	팀 수	(비율)
서울	53	(6.31%)	울산	20	(2.38%)	전북	38	(4.52%)
부산	46	(5.48%)	세종	2	(0.24%)	전남	41	(4.88%)
대구	38	(4.52%)	경기	154	(18.33%)	경북	103	(12.26%)
인천	49	(5.83%)	강원	62	(7.38%)	경남	56	(6.67%)
광주	39	(4.64%)	충북	44	(5.24%)	제주	19	(2.26%)
대전	32	(3.81%)	충남	44	(5.24%)	합계	840	(100%)

○ 표준계약서 및 운영규정 이행여부 조사 결과

구분	표준근로계약서 이행 여부		
항목	전체(전년)	준수(전년)	미흡(전년)
단체 수	273(237)	117(96)	156(141)
비율	100%	42.9%(40.5%)	57.1(59.5%)
구분	표준운영규정 이행 여부		
항목	전체(전년)	준수(전년)	미흡(전년)
단체 수	259(242)	23(8)	236(222)
비율	100%	8.9%(3.5%)	91.1(96.5%)

○ 종목별 현황 *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팀 82.7%, 그 외 17.3%

종목명		팀 수	비율(%)	종목명		팀 수	비율(%)
63개 종목 계		840	100.0	33	세팍타크로	13	1.5
1	축구	11	1.3	34	우슈	12	1.4
2	배구	11	1.3	35	스쿼시	11	1.3
3	농구	6	0.7	36	소프트볼(야구)	4(0)	0.5
4	골프	0	0.0	37	가라테	0	0.0
5	육상	90	10.7	38	크라쉬	0	0.0
6	레슬링	36	4.3	39	카바디	0	0.0
7	태권도	34	4.0	40	주짓수	0	0.0
8	양궁	31	3.7	41	e스포츠	0	0.0
9	수영(수구)	31(3)	3.7	하계 아시안경기대회(32+9)		40	4.8
10	역도	30	3.6	42	볼링	27	3.2
11	복싱	29	3.5	43	씨름	26	3.1
12	유도	28	3.3	44	검도	23	2.7
13	사격	28	3.3	45	소프트테니스	19	2.3
14	자전거	27	3.2	46	롤러	15	1.8
15	펜싱	26	3.1	47	당구	10	1.2
16	탁구	24	2.9	48	핀수영	10	1.2
17	테니스	23	2.7	49	보디빌딩	6	0.7
18	배드민턴	22	2.6	50	수상스키웨이크보드	3	0.4
19	카누	19	2.3	51	에어로빅	3	0.4
20	체조	18	2.1	52	궁도	2	0.2
21	조정	18	2.1	53	바둑	1	0.1
22	근대5종	15	1.8	54	택견	0	0.0
23	핸드볼	14	1.7	55	합기도	0	0.0
24	요트	11	1.3	56	족구	0	0.0
25	철인3종	11	1.3	전국체육대회(49=30+4+15)		145	17.3
26	하키	10	1.2	57	빙상	12	1.4
27	럭비	4	0.5	58	컬링	9	1.1
28	승마	3	0.4	59	스키	8	1.0
29	산악(스포츠클라이밍)	2	0.2	60	바이애슬론	7	0.8
30	댄스스포츠(브레이킹)	1(0)	0.1	61	루지	2	0.2
31	서핑	1	0.1	62	아이스하키	2	0.2
32	스케이트보드	0	0.0	63	봅슬레이스켈레톤	1	0.1
하계올림픽대회(32)		614	73.1	동계올림픽대회(7)		41	4.9

주)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종목 : 비 전국체육대회 종목